

제14장
경제협력

제14.1조
목적

1.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.
2. 이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경제 협력을 수행하며,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 측 또는 양측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.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,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할 것이다.
3.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,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존중하며 촉진한다.
4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.

제14.2조
범위

1.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은 양 당사국 관계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및 역량강화 활동의 확인 및 개발을 통하여 협정의 목적 달성을 기여해야 할 것이다.
2.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다음을 포함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및 역량강화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.

- 가. 산업 및 제조업
- 나. 농업 및 수산업
- 다. 서비스 및 투자
- 라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
- 마. 무역 규칙 및 절차
- 바. 과학, 기술, 혁신 및 디지털 전환
- 사. 인적자원 개발
- 마. 할랄
- 바. 공급망
- 사. 지식재산권
- 아. 바이오경제 (부속서 14-가), 그리고
- 자.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

제14.3조
경제협력 형태

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기술 지원

- 나. 인적자원 훈련
- 다. 의견 및 정보 교환
- 라. 전문가 교류
- 마. 대화, 콘퍼런스, 세미나 및 워크숍
- 바. 우수관행 공유
- 사. 공동 연구개발
- 아.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
- 자. 기술 이전
- 차. 양해각서, 그리고
- 카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경제협력

제14.4조

이행

- 1. 경제협력은 각 당사국의 법,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행된다.
- 2.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.

제14.5조

경제협력 소위원회

1. 경제협력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. 다루어질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 한 전문성을 갖춘 양 당사국 정부 외의 관련 기관 대표 또한 경제협력 소위원회로부터 초청받 을 수 있다.

2. 다음의 기관이 경제협력 소위원회를 조정하고 경제협력 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 는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말레이시아의 경우, 투자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3. 경제협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협력 활동 이행의 개시, 점검, 평가 및 조정

나.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

다.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 간 부문 기관, 비정부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초청

라.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소위원회와의 협력

마. 소위원회의 활동을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 협정의 제18.1조(공동위원회 의 설치)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제공

바.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.

사. 경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 대표로 구성될 수 있는 작업반 설치, 그리고

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및 활동 수행

4. 경제협력 소위원회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연락처를 지정할 것이다. 각 당사국은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지로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다.
5. 경제협력 소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회합하고, 그 이후 매년 회합한다.

제14.6조

자원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,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3.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.

제14.7조

분쟁해결의 비적용

제17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

부속서 14-가

바이오경제

일반 원칙

1.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의 성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과 기회를 인정하고, 바이오경제 산업에서 양국의 전략적인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.

적용범위

2.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,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바이오경제 산업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.

가. 바이오의약품

나.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

다. 바이오환경

라. 바이오의료기기

마. 바이오장비 및 바이오기기

바. 바이오자원, 그리고

사. 바이오농업

3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로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.

제1절

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

정의

4. 이 부속서의 목적상,

가. **바이오 공급망**이란 양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기업 간 경제·상업·무역 관계를 말한다. 그리고

나. **바이오 공급망** 교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중단, 자연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.

1)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. 그리고

2) 양 당사국이 결정한 바와 같이,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재료, 물품 또는 제품의 생산,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해한다.

목적

5. 이 절은 협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원력 있고 생산적이며 다변화된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하고,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바이오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거나 바이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협력

6. 양 당사국은 바이오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 이러한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양 당사국 간 바이오경제 공급망의 다변화를 증진하는 것

- 나. 바이오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¹
- 다. 중소기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, 비즈니스 매칭을 촉진하는 것, 또는
- 라. 바이오 공급망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모색하는 것

바이오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

- 7. 양 당사국은 바이오 공급망 교란에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고, 바이오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- 8. 한쪽 당사국이 바이오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 또는 정책이 바이오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, 우려가 있는 당사국은 요청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. 우려가 있는 당사국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이 요청의 대상이 되는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상호 결정한 날짜에 협의에 참여할 것이다.
- 9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정책에 따라, 가능한 한도에서, 바이오 공급망 교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대응을 지원할 것이다. 그러한 지원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유사한 바이오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는 우수 관행 또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, 또는
- 나. 바이오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동안 재료, 물품 또는 제품의 흐름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민간 부문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

¹ 이 호는 공개되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, 그리고 정책에 반하게 될 비밀정보를 당사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.

제2절

개방형 혁신

목적

10. 이 절은 양 당사국 간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개방형 혁신에 대한 협력

11.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, 양 당사국 간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 협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.

- 가. 각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자국 연구기관 및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- 나. 각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자국 연구기관 및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이 공개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, 정보 검색도구 및 양 당사국과 관련된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제공을 포함한 방법으로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자국 연구기관 및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.
- 다. 양 당사국은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포함한 정기적인 중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,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양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 간의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 그리고
- 라. 양 당사국은 과학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 사업을 설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,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12. 양 당사국은 제11항에 규정된 활동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동에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 양

당사국은 개방형 혁신 활동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, 그들을 위한 훈련 및 멘토링 그리고 기술 지원을 포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제3절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

목적

13. 이 절은 바이오경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역량 강화를 증진 및 향상하고,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에 대한 협력

14. 양 당사국은 연구자, 전문가 및 실무 종사자를 포함한 바이오경제 산업에서의 전문인력 교류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15. 양 당사국은 연구개발, 표준, 규제 및 시장 요건, 면허 또는 승인,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류를 증진하고, 이러한 분야에서의 우수 관행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